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2. 2·3 Vol. 30



P&B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집 06 1. 구성

Ⅱ.

발의 10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7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 4) 인권정책기본법안
21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3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5 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6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1 1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33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4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7 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39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40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44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27)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4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50 **1. 상정 법률안 목록**

Ⅳ. 상임위원회 52 **1. 상정 법률안 목록**

Ⅴ. 본회의 56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58 별첨① **용어해설**
62 별첨② **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집

1. 구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21.03.17. 기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코로나비상대응특위원장
안철수

주요 경력 국민의당 대표
제19·20대 국회의원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주요 경력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김병준

주요 경력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부위원장
권영세

주요 경력 제16·17·18·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



기획위원장
원희룡

주요 경력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취임준비위원장
박주선

주요 경력 제16·18·19·20대 국회의원
전 국회 부의장



기획조정분과 간사
추경호

주요 경력 제20·21대 국회의원
전 국무조정실 실장



기획조정분과 위원
이태규

주요 경력 제20·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기획조정분과 위원
최종학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제1분과 간사
최상목

주요 경력 농협대학교 총장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1분과 위원
김소영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국제결제은행 BIS 자문역



경제1분과 위원
신성환

주요 경력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외교안보분과 간사
김성한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외교안보분과 위원
김태효

주요 경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외교안보분과 위원
이종섭
주요 경력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주요 경력 제20·21대 국회의원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담당 비서관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유상범
주요 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박순애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



경제2분과 위원
이창양
주요 경력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전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경제2분과 위원
왕윤종
주요 경력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전 SK 중국경제연구소장



경제2분과 위원
유웅환
주요 경력 SK텔레콤 고문
전 SK텔레콤 ESG혁신그룹장



경제2분과 위원
고 산
주요 경력 타이드인스튜티튜트 대표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과학연구팀 선임연구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
주요 경력 제20·21대 국회의원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구청장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김창경
주요 경력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남기태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美 MIT 공대 재료공학 박사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임이자
주요 경력 제20·21대 국회의원
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안상훈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백경란
주요 경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김도식
주요 경력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



대변인
신용현
주요 경력 제20대 국회의원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수석부대변인
원일희
주요 경력 전 SBS 논설위원
전 SBS 워싱턴 특파원



수석부대변인
최지현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인권정책기본법안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12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발의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19	소방조직법안
		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건축예술진흥법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1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3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11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9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발의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49호



조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5.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음.

이에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4조의2 신설).

2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88호



박 주 민

선 거 구	서울 은평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6.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등과 같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ESG경영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주주총회 구조 아래에서 소수주주가 ESG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의2, 안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제542조의16 신설).

3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96호



송 재 호

선 거 구	제주 제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08.	제안

제안이유

최근 코인 · 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

또한 코로나시대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기업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에 대해 재무적 ·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7조 및 제447조의2).

4

법제사법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20호



김 영 배

선 거 구	서울 성북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8.	제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 · 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 ·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 · 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5

법제사법위원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12호



윤 영 덕

선 거 구	광주 동구남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23.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당시에는 남소를 우려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음. 그러나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허위 · 부실 공시로 인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 시행 이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8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 · 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6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840호



민 형 배

선 거 구	광주 광산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28. 제안

제안이유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들 중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 · 중과실로 발생함. 현행법상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문제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임. 형량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임.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업무상과실 · 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 · 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음.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안 제268조).

7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68호



이 용 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3.10.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8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452호



송 언 석

선 거 구	경북 김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 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18. 제안

제안이유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9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41호



송 언 석

선 거 구	경북 김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8. 제안

제안이유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함.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0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769호



이 용 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14.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들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법인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이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174조, 제174조의2 및 제174조의3 신설).

11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36호



이 장 섭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28.	제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59조).

12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471호



권 은 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19. 제안

제안이유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관련자 등에 대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라목 신설 및 안 제10조).

13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73호



노 웅 래

선 거 구	서울 마포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6. 제안

제안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6제1항제7호 신설 등).

14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08호



김 정 호

선 거 구	경남 김해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22. 제안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요소(이하 "ESG"라 한다)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ESG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5천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중 ESG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하고 ESG 관계 부서가 없는 기업은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를 고려한 경영을 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컨설팅을 통하여 ESG 관련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관련 경영전략을 원활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97호



조 승 래

선 거 구	대전 유성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08.	제안

제안이유

최근 미 · 중 간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제외하면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체계가 개별 이슈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발전과 국가안보 · 외교 · 기술주권 확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 ·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 · 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458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18.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자신의 전화가 해지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요금을 인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759호



이 병 훈

선 거 구	광주 동구남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11.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앱 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나 해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또는 가입 절차에 비하여 결제취소 또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1항,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92호



정 필 모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08.	제안

제안이유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특정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은 각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가 수집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선제적으로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등).

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457호



조 명 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18.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다만,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시행령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사행성이 짙은 사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가상자산이 자산의 한 종류로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하여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25호



양이원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4.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료전지 발전의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에서 개질수소를 만들어낼 때에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456호



이 장 섭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18. 제안

제안이유

최근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1,700개, 2030년 기준 107,500개의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안에 들어 있는 리튬이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급격히 반응해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특히, 폐배터리의 성능이 70~8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나. "안전성검사"를 재사용전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재사용전지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를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각각 신설).

라.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안 제38조의4 신설).

마.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7까지 각각 신설).

바.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 각각 신설).

사. 그 밖에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49조 및 제51조 등).

22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31호



김 정 재

선 거 구	경북 포항시북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24.	제안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23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757호



김 도 읍

선 거 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11.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 제60조를 해석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 해 왔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 재직기간이 1년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판결하였음.

이와 같은 행정해석과 판례의 상반된 해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일선 기업의 인사 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인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

24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48호



강 민 정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5.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20' 산업재해 통계(표1 참고)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률은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714명)가 발생했고, 5인 미만 35.4%(312명), 5~49인에서 45.6%(45.6%)가 발생하였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그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이에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되 정부에 중대재해예방기금을 마련·운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양형 절차 특례, 직무유기죄를 범한 공무원 처벌, 법정형의 하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이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4조).

라.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사.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안 제13조)

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손해배상 책임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를 삭제함(안 제15조).

차. 정부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원기금의 마련 및 운용함(안 제16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17조).

파. 법무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8조).

25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95호



윤 준 병

선 거 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08.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다는 점, 해당 사업장들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 · 2차 협력업체에 해당하기보다는 3 · 4차 협력업체 내지는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용이 제외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26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74호



송 갑 석

선 거 구	광주 서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1.26.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27

국토교통위원회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43호



송 석 준

선 거 구	경기 이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28. 제안

제안이유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신도시의 기업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외곽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집단 노후화로 등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더욱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1기 및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인근지역 또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물량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함(안 제23조).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증가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28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70호



조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3.11.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달라져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함.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2조제3호라목).

나.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라.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후단).

29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748호



진 성 준

선 거 구	서울 강서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재선(19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11. 제안

제안이유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플랫폼운송중개사업)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2021. 4. 8 현행법 개정).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불공정 배차 및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가 지속되고 있고,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 및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콜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역할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 요금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제49조의21 및 제92조제17호 · 제18호 신설).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3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4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이장 ·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9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12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13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간호법안
		2	간호 · 조산법안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1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없음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3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4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5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1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의회법안
		4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①

용어해설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②

국회일정표

별첨 국회 일정표

2, 3월호는 2022.1.17.부터 2022.3.15.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자 / 위원회	1월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4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국회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1일	2월 1일	2일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 제393회 제1차					
	●						
		●					
		● 윤리특별위원회					

별첨 국회 일정표

2, 3월호는 2022.1.17.부터 2022.3.15.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자 / 위원회	3일	4일	5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				●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12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제393회 제2차						
	●						
	● 윤리특별위원회						
						●	●

별첨 국회 일정표

2, 3월호는 2022.1.17.부터 2022.3.15.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자 / 위원회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8일	3월 1일	2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국회본회의	● 제393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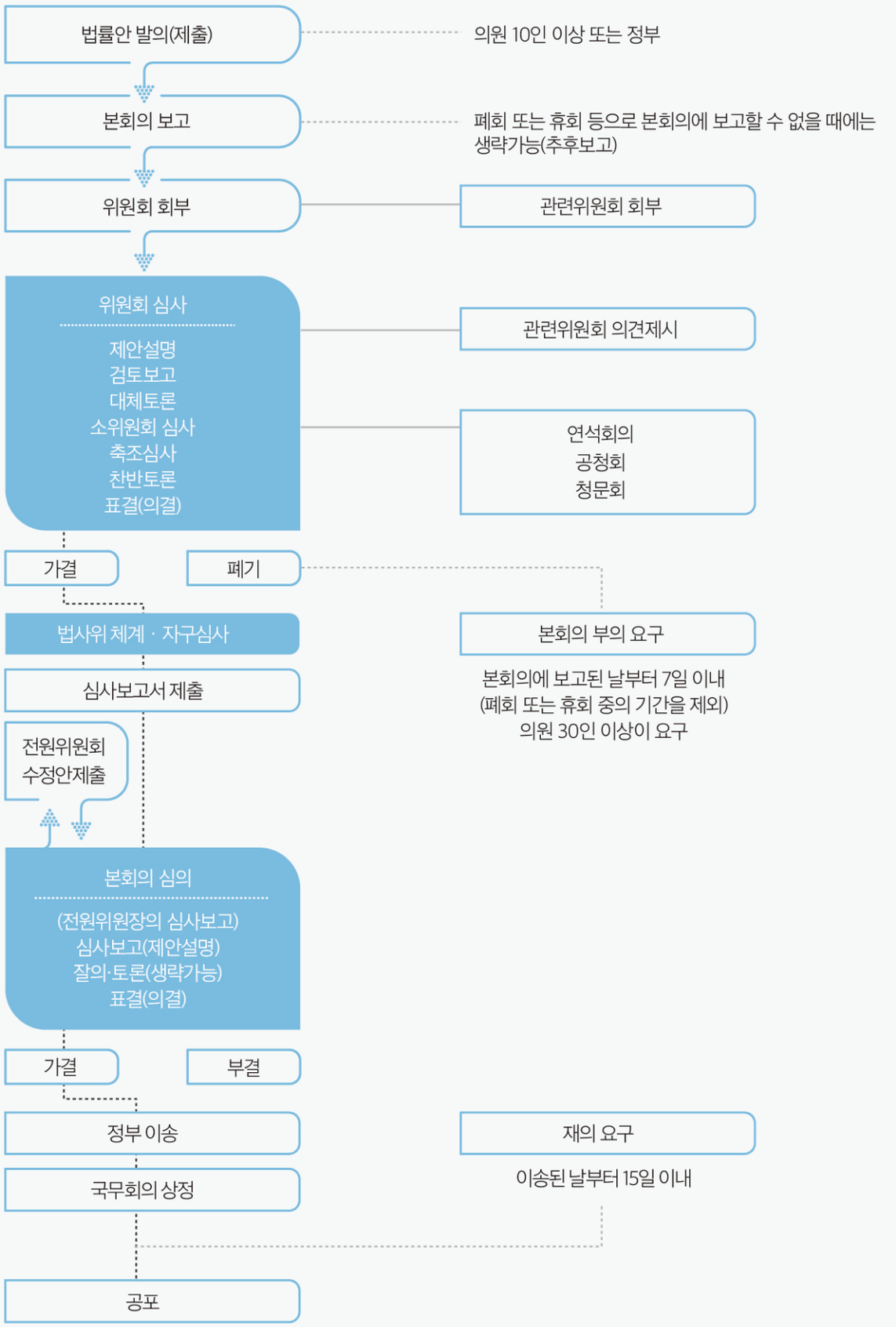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4일	15일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	●						
	●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동훈타워 7, 8, 10-16층)
www.draju.com